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가합56008 대위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원
피 고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인진, 류채령, 오성진, 이창민, 최영철
2. 한국자산관리공사
변 론 종 결 2019. 7. 3.
판 결 선 고 2019. 8. 14.

주 문

1. 망 C의 상속재산관리인 D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
소 1987. 1. 27. 접수 제3241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 별지 목록 제1, 3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

기소 1987. 1. 27. 접수 제3244호로 마친 각 지상권설정등기의,

(3) 별지 목록 제9 내지 1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

기소 1988. 11. 5. 접수 제45756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4) 별지 목록 제9 내지 12, 14 내지 1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

원 남양주등기소 1988. 11. 5. 접수 제45757호로 마친 각 지상권설정등기의,

(5) 별지 목록 제1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4.

6. 3. 접수 제2653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6) 별지 목록 제1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4.

6. 3. 접수 제26538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

원 남양주등기소 1987. 1. 27. 접수 제3244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담보권 설정

1) 피고 주식회사 B(합병전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B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F(변경전 G 주식회사, 이하 'F'이라 한다)의 채무를 담보하여 위하여 물상보증인 망 C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담보를 설정하였다.

가) 1987. 1. 27.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37,50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B은행'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87. 1. 27. 접수 제3241호), ② '존속기간 30년, 지상권자 피고 B은행'으로 한 각 지상권설정(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87. 1. 27. 접수 제3244호)

나) 1988. 11. 5. ① 별지 목록 제9 내지 1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50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B은행'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88. 11. 5. 접수 제45756호), ② 별지 목록 제9 내지 12, 14 내지 1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존속기간 30년, 지상권자 피고 B은행'으로 한 각 지상권설정(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88. 11. 5. 접수 제45757호)

다) 1994. 6. 3. 별지 목록 제1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37,50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B은행'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4. 6. 3. 접수 제26537호), ② '존속기간 30년, 지상권자 피고 B은행'으로 한 각 지상권설정(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87. 1. 27. 접수 제3244호, 이하 위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담보권'이라 한다)

2)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변경전 성업공사)는 1998. 9. 29. 피고 B은행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지상권을 양수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1999. 12. 6. 접수 제80920호 지상권 이전등기).

나. 한편, F은 1989. 1. 24.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고,

1989. 11. 4. 정리계획인가 결정(이하 '이 사건 정리계획에 대한 1차 인가 결정'이라 한다)을, 1992. 11. 26., 1998. 1. 12. 각 정리계획변경인가 결정(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정리계획에 대한 2차, 3차 인가 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후, 2003. 12. 19. "2003. 11. 30. 기준 당시까지 남아있던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 가운데 (1) 정리담보권은 합계 219,952,138,099원 중 115,763,049,277원을 일시에 변제하고, 27,034,000,000원을 출자 전환하며, 나머지는 면제하고, (2) 정리채권은 합계 45,619,839,692원 중 7,014,050,723원을 일시에 변제하고, 9,994,000,000원을 출자전환하며, 나머지는 면제"하기로 하는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의 인가 결정(이하 '이 사건 정리계획에 대한 4차 인가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인가 결정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은 2004. 1. 27. 위 회사정리절차의 종결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라 한다).

다. C는 2005. 7. 14. 사망하였고, C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은 2008. 5. 26. C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D를 선임하였다.

라. 원고는 망 C의 상속재산관리인 D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8. 14. '망 C의 상속재산관리인 D은 원고에게 7,260,887,938원 및 그중 838,186,452원에 대하여 2005.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9. 1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 원고와 피고 B은행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 을 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B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망 C의 상속재산관리인 D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고,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C의 상속재산관리인 D의 자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유일한데 그 가치를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609,796,610원으로 원고의 채권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망 C의 상속재산관리인 D의 무자력)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 C의 상속재산관리인 D은 무자력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담보권의 말소를 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2)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는 2004. 1. 27. F이 이 사건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에 대한 변제를 완료함으로써 종결되었는바, 물상보증인인 C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 사건 각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중 이 사건 정리계획에서 변제하는 것으로 정해진 부분은 위 종결이 있기 전 변제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정리계획에서 면제하는 것으로 정해진 나머지 부분만이 변제로 소멸하지 않고 남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중 면제된 부분에 대응하는 물상보증인인 C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피고 B은행인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함으로써 중단되었다가 이 사건 정리계획에 대한 1 내지 4차 인가 결정이 확정된 무렵(1989. 11.경부터 2003. 12.경) 각 계획에서 면제하는 것으로 정해진 부분에 관하여 순차로 다시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이 사건 각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중 면제된 부분에 관한 여신거래로 인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B은행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 F은 주택사업 등을 영위하는 상인이고, 이 사건 피담보채

무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다)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각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담보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하였고, 피고 B은행은 이 사건 각 담보권(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전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지상권 제외)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행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은행의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로 인하여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 면제되었으므로, 물상보증인(및 그 대위채권자)은 주채무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

나)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이 확정된 후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되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권리'는 피담보채권이 아니라 해당 근저당권 자체이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20년이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회사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5조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는데, 후에 정리계획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에 그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채무는 정리계획의 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 소멸하게 됨에 따라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므로 그 부

분에 대응하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 결정 확정시부터 다시 진행한다(대법원 2017. 8. 30. 자 2017마600 결정 등 참조).

나)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은 정리담보권자가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회사의 채무가 면책되거나 변경되더라도 물상보증인 등의 의무는 면책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서 여기에서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란 정리채권자 등이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제3자의 재산상에 가지고 있는 담보물권을 의미하므로, 정리채권자는 회사 이외의 자가 제공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는 정리계획으로 변경되기 전의 당초 약정에 기한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대법원 2017. 8. 30. 자 2017마600 결정 등 참조).

3) 판단

가) 위 1)의 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정리계획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에 그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채무는 정리계획의 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 소멸하게 됨에 따라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므로 그 부분에 대응하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 결정 확정시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이므로, 피고 B은행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1)의 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정리계획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

부가 면제된 경우, 그 면제된 부분에 대응하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담보물권뿐만 아니라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도 진행하는 것이므로, 피고 B은행의 위 주
장도 이유 없다.

3.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담보 목적의
지상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청구

나.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희

판사 이인경

판사 이인걸

[별지]

목록

1. 경기도 남양주시 H 임야 9596m²
2. 경기도 남양주시 I 임야 21421m²
3. 경기도 남양주시 J 임야 11070m²
4. 경기도 남양주시 K 임야 1455m²
5. 경기도 남양주시 L 임야 1809m²
6. 경기도 남양주시 M 임야 13726m²
7. 경기도 남양주시 N 임야 1238m²
8. 경기도 남양주시 O 임야 1855m²
9. 경기도 남양주시 P 답 4m²
10. 경기도 남양주시 Q 답 175m²
11. 경기도 남양주시 R 답 45m²
12. 경기도 남양주시 S 답 114m²
13. 경기도 남양주시 T 묘지 49m²
14. 경기도 남양주시 U 전 2m²
15. 경기도 남양주시 V 전 78m²
16. 경기도 남양주시 W 전 48m²
17. 경기도 남양주시 X 전 251m²
18. 경기도 남양주시 Y 전 922평. 끝.